

로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 BE8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로만자산운용(주)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주)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라 함은 법 9조 제 19항 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1.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로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③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 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8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 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 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 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 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 종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 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 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 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법 제249조8의제2항에 따른 적격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 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투자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 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 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승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4조 제 1항의 증권(IPO 관련 증권 포함)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법 시행령 제 240 조 제 4 항 제 5 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유동화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유동화 증권.
6. 법 시행령 제 240 조 제 4 항 제 5 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유동화자산의 50% 미만인 법인이 발행한 유동화 증권.
7. 본 항 제 4 호 내지 5 호 이외에 법 제 229 조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8. 본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 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9. 법 시행령 제 240 조제 5 항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10. 민법 제 598 조에 따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는 개인이어서는



아니되며,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1.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12.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13.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14.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5.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6. 증권의 차입
17.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본 투자신탁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취득한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 3조의 2와 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취득분의 평가 총액.
3. 법 시행령 제 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0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에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의 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제 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제23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4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환매연기)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2.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③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 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17시 이후 제4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29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회계기간 중 임의결산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결산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제30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매 회계기간 말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시 종료일 포함)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보유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지급한다. 단,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액 (이하 "초과이익 분배금"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②제 1항에 의하여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시에는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제 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회수되는 경우 임시결산을 통하여 이익금 및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 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인)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 시행령 제 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황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5조(수익자 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6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



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 중 실물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 실물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업자의 보수와 별도로 계상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36조의2 (성과보수)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항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가. 수익자의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 나. 가목에 따른 회계연도 이후에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 가. 성과보수 금액 : $\text{Max}[\text{초과수익금액}(1) * \text{성과보수율}(2), 0]$
 - 나. 계산방법



(1) 초과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3) - Hurdle 금액(4)
(2) 성과보수율	20%
(3) 성과보수 계산 기간 말일의 투자 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좌수 * 해당일에 계산된 1좌당 결산시 기준가격. 다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좌수 * 1좌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4) Hurdle 금액	a. High Water Mark 평가액(5) * (1 + Hurdle rate(6)) b. 해당 회계연도 안에 수익자 계좌별로 당해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 된 경우 각각의 매입 건(결산 후 재투자금액 포함)별로 High Water Mark 평가액과 Hurdle rate 를 계산하여 각각의 Hurdle 금액을 구한 후, 이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Σ(각 High Water Mark 평가액 * (1 + 각 Hurdle rate))] c. 해당 회계연도 안에 수익자 계좌별로 당해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 된 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High Water Mark 평가액 * (1+각 Hurdle rate) * 환매좌수/총 좌수) 로 한다.
(5) High Water Mark 평가액	a.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7). 다만,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된 경우에는 각 취득가액의 합으로 한다. b.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8)] 다만, 당해 회계연도 초일 이후에 수익증권의 취득이 추가로 있었던 경우에는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8)] + Σ(추가로 취득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c.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환매 청구시 a. 또는 b.에 따른 High Water Mark 평가액 * 환매좌수 / 총좌수 d. 회계연도 안에 수익증권의 환매가 존재하는 경우 잔여 High Water Mark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Σ(해당 High Water Mark 평가액 * 해당 환매좌수 / 환매 당시 총좌수)
(6) Hurdle rate	5%
(7) 취득가액	매입좌수 * 1좌당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8) 회계연도 초일 의 투자신탁 평가 액	해당일 현재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

3. 성과보수 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까지 이연되며, 다음 이익분배금 지급일에 당해 이연된 성과보수와 해당 성과보수보수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해당 이익분배금으로부터 취득하되, 이연된 성과보수를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성과보수 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일부환매된 금액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3. 수익증권의 전부환매일. 다만, 이 경우에는 위의 제1호에 따라 이연된 모든 성과보수와 당해 성과보수를 환매금액으로부터 취득한다.

⑤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함으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 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⑥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사항

성명	생년	직위	주요경력
김수환	1979.01.10	대표이사	Emmanuel College in Boston 성균관대학교 MBA 리딩투자증권 Trading팀
남성욱	1982.08.04	차장	경희대학교 아우름자산운용 운용1팀
성경민	1991.01.11	주임	경성대학교 경제금융

2. 운용성과 : 해당사항없음



제37조(환매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개월 미만 : 이익금의 70%

③판매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5.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6.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7.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9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중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한다) 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0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24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2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249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5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법 제 6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7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8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갑)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76, 401호,402호
(운중동,트윈프라자2)

상 호 :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대표이사 : 김 수 환 (인)



신탁업자(을)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34-9)

상 호 :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 정 지 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정 지 원
차장 박 준 호

